



“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 현황 및 향후전망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
전대천 부장

1. IECEE 개요

전기분야의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이하 IEC)에서는 회원국간 통일된 규격과 간소한 절차에 의한 인증을 통해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자 적합성평가이사회 소속으로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이하 IECEE)를 운영하고 있다.

1946년도 유럽에서는 하나의 국가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된 전기제품을 재시험 없이 상호인정하자는 취지로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이하 CEE)를 설립하였다. 그 후 1985년 9월 IEC에서는 지역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회원국 상호간에 서로 인정함으로써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각국의 인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CEE를 합병하여 IECEE를 설립하였다.

초기의 IECEE에서는 CEE규격을 시험기술기준으로 활용하였으나, 1989년부터는 시험기술기준으로 IEC규격을 활용하고 있다.

2. IECEE 조직 구성

IECEE는 인증관리위원회(이하 CMC), 시험소위원회(이하 CTL), 제소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MC에는 자체임원, 회원국 대표, 시험소위원회 임원, 기타 IEC 자문위원회 대표가 참석하여 IECEE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IECEE 제도운영 절차 및 규정의 제·개정, 인증대상품목 및 적용규격 지정, 국가대표기관(MB)·국가인증기관(NCB)·공인시험소(CBTL)의 승인, CMC·CTL·제소위원회 등의 임원 임명 등이 있다. 이들 중 IECEE 운영절차 및 규정 제·개정 등 중요사항은 적합성평가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CTL에는 각국 국가인증기관 및 공인시험소의 대표자가 참여하여 시험결과의 재현성 개선 및 시험소간의 협력추진을 논의하고, IECEE 승인 규격상의 시험세칙·시험방법·시험기기 등과 관련된 현안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한다.

제소위원회는 IECEE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규정위반 제소건에 대하여 해당 국가인증기관 및 공인시험소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권고한다. 국가대표기관과 국가인증기관은 제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소위원회는 통상 CMC의 회의시기에 맞추어 개최되나 원고가 제소위원회 개최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개최될 수 있다.

[IECEE 조직 구성도]



▶ 다음호에 계속